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7. 2.

발 의 자 : 최형규 위원외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(2006.4.28 법률제7935호)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가 제정(2007.1.2 조례제640호)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7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50조의2(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)
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
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입법예고 : 생략

라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7조(특별위원회)①,②(생략) 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. ④(생략)	제7조(특별위원회)①,②(현행과 같음)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 ④(현행과 같음)